****

**MCN가입계약서\_V.2.0**

|  |
| --- |
| * **안내사항** ・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자와 출처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표기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 삭제, 변경할 수 있으나, 수정, 보완, 삭제, 변경된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에는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센스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은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이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손해 등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모두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점에 동의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실 법률문서 양식은 변호사 등 권한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계약서 제공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

****

****

**MCN 가입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회사”)와 크리에이터 (예명 : , 이하 “크리에이터”)는 다음과 같이 MCN 가입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 동안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다.

**다 음**

**제 1조 [개요]**

1.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채널이 “회사”의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가입하여 소속하게 됨을 동의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
2.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채널의 시청자 확보, 콘텐츠 편성, 공동작업, 디지털 권한 관리, 수익 창출 또는 판매 등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고, 본 계약기간 동안 “크리에이터” 활동 및 “크리에이터”의 “채널” 및 “콘텐츠”와 관련된 독점배타적인 사업 권한을 가진다.
3. “크리에이터”는 “회사”를 통해 아래의 조건(제 10조)에 따라 “채널” 및 “콘텐츠”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회사”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배분 받는다.

**제 2조 [정의]**

1. **“채널”** : “크리에이터”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YouTube, 아프리카TV, 판도라TV, 곰TV, 틱톡 기타 일체의 인터넷, 모바일 방송 또는 “크리에이터”가 소유/관리/운영하는 모든 SNS를 포함한 일체의 콘텐츠 공중송신 유통 채널을 의미하며, 또한 “회사”와 계약에 의해 제공된 모바일App/온라인Website 등 “크리에이터”와 “회사”의 콘텐츠를 서비스 할 수 있는 모든 유통 채널을 포함한 의미이다.
2. **“콘텐츠**” :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업로드 된 비디오, 영상, 자막, 카피라이트, 썸네일, 음원, 브랜드, BI, CI, 이미지 정보 및 이와 관계된 부가(메타)정보를 의미한다.
3. **“MCN”** :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채널”과 제휴한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시청자 확보, 콘텐츠 편성, 크리에이터들의 공동작업, 디지털 권한 관리, 수익 창출 또는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한 마스터 계정을 소유하고 글로벌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의 사업 및 브랜드를 통칭하며 “본 계약”에서는 “ “를 의미한다. 단, 본 명칭은 변경이 가능하다.
4. **“수익”** : “회사”가 본 계약 제5조의 각 권한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일체의 매출액에서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본 계약 또는 별도 서면 합의로 인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부가세는 별도).

**제 3조 [MCN 가입]**

“크리에이터”는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모든 채널을 “회사”의 “MCN”에 연결하여 가입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MCN”에 가입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입 절차에 따라 “회사”의 “MCN”에 “크리에이터”의 모든 채널을 연결하여 소속시켜야 한다.
2. “크리에이터”는 각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받는 계정을 “회사”의 “MCN” 채널 계정으로 이관한다.
3.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MCN”에 연결된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있는 “콘텐츠”의 수익 창출 관리, 소유권 주장 및 “채널”의 브랜딩 설정 등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제 4조 [회사의 서비스 및 지원 범위]**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한다.

1. “크리에이터”의 “채널” 구독자 수, 시청지속시간, 조회 수, 전환율 등 “채널”의 수익 및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관리, 프로모션 기회 제공 서비스
2. “크리에이터”의 “채널” 운영 관리 및 “콘텐츠” 기획, 제작, 홍보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회사” 보유 솔루션, 도구, 시설, 장비 제공 또는 공유 서비스
3. “MCN” 소속 타 크리에이터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콘텐츠” 제작 기회 제공 서비스
4. “MCN” 가입 “채널” 및 “콘텐츠” 관련 발생 수익의 정산 관리 서비스
5. 본 계약 제5조에 의하여 “회사”에 부여된 독점 권한 관련 수익 창출 및 판매 서비스

**제 5조 [회사의 부여된 독점배타적 권한]**

“크리에이터”는 “회사”에게 아래 각 권한을 독점배타적으로 부여하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본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배분한다. 단, “회사”가 아래 각 권한에 의하여 “크리에이터”의 채널 및 콘텐츠를 관리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크리에이터”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아래에 정한 구체적 사유 외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크리에이터”의 “채널” 및 “콘텐츠”를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크리에이터”의 SNS 및 기타 채널을 통해 “회사”가 직접 광고형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거나 이벤트, 프로모션 등 상업적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2.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크리에이터”의 SNS에서 발생한 모든 콘텐츠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이용하거나 이를 수정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하여 머천다이징, 커머스, 라이선스 계약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권리
3. “회사”의 “MCN”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크리에이터”의 각 채널을 통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
4. “회사”의 “MCN”에 소속된 다른 채널 및 크리에이터를 마케팅하거나 공동 마케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콘텐츠 등을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5. “회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플랫폼, 채널, SNS 등에서의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6. “크리에이터”가 참여, 출연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및 브랜디드 콘텐츠 또는 광고 콘텐츠의 기획, 영업,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해당 콘텐츠의 판매, 전송, 이용허락, 커머스, 머천다이징 등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7.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사진 등 “크리에이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일체의 요소를 활용하여 캐릭터, 로고 등 2차적저작물 작성, 지식재산권화, 머천다이징, 이용허락 등을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8. “크리에이터”의 방송 출연, 광고 모델 출연, 행사 참여 등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
9. CMS(콘텐츠매니지먼트시스템) 관리자로서 “회사”가 아래 각 경우 “크리에이터”의 “채널” 및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10. 법령 또는 “채널” 운영사 정책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콘텐츠” 저작권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기술적 오류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콘텐츠” 내 자막 삽입, 광고주 요청 사항 반영 및 Google Ads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회사”가 본 계약 제7조 의무 준수를 위해 CMS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15. “크리에이터”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명백히 “크리에이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기타 “크리에이터”가 별도 약정으로 “회사”에게 부여한 권리

**제 6조 [MCN 홍보 동의]**

“크리에이터”는 “회사”의 아래와 같은 홍보 요청에 동의한다.

1. “크리에이터”의 채널에서 “회사”의 로고 또는 “회사” “MCN” 의 브랜딩 요소 삽입을 위하여 “크리에이터”의 각 채널 내 편집이 가능한 영역,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내 중간 삽입 영역, 최종 슬레이트 등 사용
2.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채널 및 SNS, 기타 홍보 수단 중 주석, 링크 및 수동 또는 자동화 된 수단에 의해 구현 될 수 있는 크로스 프로모션 영역의 사용

**제 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및 “콘텐츠”의 성장을 위하여 제4조의 서비스 및 지원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신용, 명예, 이미지, 브랜드 가치, 이익 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의 제작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3. ““회사”는 본 계약 제5조 각 항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크리에이터”의 출연 또는 참여가 필요한 사업, “크리이에터”의 초상, 성명, 채널 브랜드, 상표 등을 활용한 사업 진행 시에는 사전에 “크리에이터”에게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공유하고 협의한 후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본 계약 제5조 각 항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크리에이터”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크리에이터”에게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협의한 후 서면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본 계약 제5조 각 항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계약기간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도과할 경우 사전에 “크리에이터”에게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기존에 독자적인 “콘텐츠” 및 구독자 수가 상당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7.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채널”의 매월 각종 수익 관련 지표 현황과 매월 채널별, 매체별, 사업별 수익 정산 현황을 표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크리에이터”가 보고서 내역에 대한 증빙 또는 근거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 8조 [크리에이터의 권리와 의무]**

1.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및 “크리에이터”의 채널, 콘텐츠, 브랜드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본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2.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의 명예, 이미지, 신용, 이익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회사”의 “콘텐츠” 제작 또는 광고 출연, 행사 및 사업 참여 등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3. “크리에이터”는 계약기간 동안 “크리에이터”의 각 채널에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등 각 채널운용사가 정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규정과 “회사”의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크리에이터”는 “채널”에 업로드하는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그 “콘텐츠”로 인하여 제3자의 권한, 권리 등이 침해되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크리에이터”는 해당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해당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책임을 지고, “크리에이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크리에이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6. “크리에이터”는 타 채널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회사”의 “MCN”에 속하지 않은 제3의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공동제작 또는 기타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고지한 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크리에이터”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업로드하여서는 아니된다.
8.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가 제5조의 독점 권한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참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여 요청하는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참여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9. “크리에이터”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 및 초상, 성명 등을 활용하여 영리활동 또는 부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계약에 저촉되는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 “MCN”, “회사” 소속 타 크리에이터 및 “회사”의 광고주 등의 브랜드 가치, 신용, 명예, 이미지, 이익 등을 훼손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여서는 아니된다.
11.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법령위반, 사회상규 위반, 사회적 물의,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12. “크리에이터”가 기존에 독자적인 “콘텐츠” 및 구독자 수가 상당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제공하는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본 계약 다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가 제시하는 자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3.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기간 동안 질병, 입대, 사고,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와 사전 합의 없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은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지식재산권]**

1. “크리에이터”가 단독으로 기획,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된다.
2. “회사”의 기획 및 비용 지출로 제작하고 “크리에이터”가 출연하여 “채널”에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3. “회사” 및 “크리에이터”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귀속한다.
4. 광고주 또는 제3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의 귀속은 해당 용역계약에 따른다.
5.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회사”가 “크리에이터”의 동의를 얻어 “회사” 비용으로 출원, 등록한 상표, 디자인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6. 기타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법령에 따른다.

**제 10조 [계약금과 수익금 배분]**

1.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제5조 독점배타적 권한 부여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 금 000원을 지급한다. 본 계약금은 “크리에이터”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해지, 종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반환 의무가 없으며, 수익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회사”는 계약금과 별도로 하기 내용에 해당하는 비율의 수익금을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1.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각 채널로 인해 채널운영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 수익의 %
	2. 본 계약 제5조 각 호(8호 제외)의 일체의 상업적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일체의 매출에서 제3자에 대한 지급수수료 및 기타 “크리에이터”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 공제 대상 비용을 차감한 수익의 %
	3. 상기 수익 정산율과 관련하여서는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에 의거하여 지급
3.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하기 내용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상호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 차감 대상 비용을 공제한 수익 중 아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4. “회사”가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대하여 직접 삽입형 광고 판매로 인하여 발생시킨 수익의 %
5.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
6. 본 계약 제5조 제8호의 광고모델, 방송출연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의 %
7. 기타 “크리에이터”와 “회사”와의 별건 계약 관계에서 의거하여 발생하는 매출
8. 지급 조건
9.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회사”는 월 단위로 수익을 정산하여 지불하며, 수익의 발생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10. “회사”는 매월 익월 영업일 내, “크리에이터”가 정산 받을 금액에 대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정산서를 발급한다.
11.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매월 정산 수익금은 “회사”가 각 채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확정 받는 시점에 함께 본 조 제2항 가호의 수익 배분율에 따라 확정되며, 외화인 경우 당월 말일 ‘외환은행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전된다.
12. “회사”는 각 채널들로부터 수입금액을 확정 받는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내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매월 영업일까지 전월에 각 채널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을 정산하여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단, 연체시에는 연 %의 지연손해금이 일할 가산된다.
13.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표준 송금에 따른 결제처리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14. 지급 조건의 예외 – 정산일, 정산 방식에 관하여는 각 채널 정책의 변경 및 “회사”와 “크리에이터”의 특약에 따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1조 [부가 조건]**

1. “크리에이터”는 제 3 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만약 계약 체결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본 계약서에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도록 한다.
2.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수정, 변형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및 광고물이나 “크리에이터”의 각 채널 및 콘텐츠로 인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보호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과 충돌이 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제 3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 12조 [비밀유지]**

* 1. 계약기간 중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상대방의 명성을 비방하거나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악용, 오용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2.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제공한 모든 자산 및 계약 조건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수단, 정보, 자산에 대하여 고의, 과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제공, 유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제 13조 [계약기간 및 해지]**

1. 계약기간 : “회사”와 “크리에이터”의 본 계약 서명 또는 날인으로 인해 본 계약은 즉시 성립하며 최초 계약은 서명, 날인일로부터 년간 유효하며, 계약 종료 30일전까지 서면(내용증명, 전자메일, Fax 등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 수단 포함)에 의한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요청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매 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크리에이터”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2.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3.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서면으로 의무이행 또는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일 이내에 이행 또는 시정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불이행자는 아래 ‘다’호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가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명예, 신용, 이익을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행위를 회 이상하는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내용증명, 전자메일, Fax 등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 수단 포함)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다’호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도중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파기를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제10조 1항의 계약금 + (해지일 직전 6개월 평균 “상대방” 월 수익 × 계약 잔여 개월 수)

1. 위 ’다’호에 의한 계약 해지의 효력은 ‘다’호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 전부를 상대방에게 지급 완료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 일방이 파산 또는 회생 신청, 어음부도, 강제집행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위 각 호의 경우 외에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조 [계약종료]**

본 계약이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본 계약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 브랜드, 상표, 로고, 디자인, 초상, 성명 등에 대한 이용 권한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자동으로 종료되며, 권한이 종료되면 이에 대하여 일체의 사용권한이 없다. 단, 계약기간 중 유효하게 체결된 제3자와 사이의 계약은 제3자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회사”의 정산의무도 존속한다.
2. “회사”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채널”을 “MCN”에서 연결 해제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를 지체할 경우 “크리에이터”는 직접 채널 운영사에게 “MCN”의 “채널” 액세스 권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크리에이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널” 내 “콘텐츠” 중 “회사”나 제3자에게 단독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는 “채널”에서 삭제하고 원본을 “회사”에게 이전하고 사본을 삭제하여야 한다.
4. “회사”와 “크리에이터”에게 공동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이용 및 수익 배분에 대하여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및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5.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회사” 또는 제3자의 기획과 비용으로 제작한 2차적저작물 및 콘텐츠에 경우에는 다른 서면 합의가 업는 한 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2차적저작물 및 콘텐츠로 인하여 “회사”에게 매출이 발생하는 동안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의무가 존속한다.
6.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회사”의 기획과 비용으로 출원, 등록, 관리한 상표 또는 디자인권은 “크리에이터”가 “회사에게” 기획, 개발, 출원, 등록, 관리에 지출된 실 비용 상당액을 대가로 지급하고 이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 본 항에 따른 처리와 일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개이다.

**제 15조 [세금]**

1.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가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수익 및 보상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모든 세금을 계산하고 지불할 책임이 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세금과 관련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3.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가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과 보상에 대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하여 생기는 법률 및 기타 대한민국 및 국제기관 규정에 따라 생기는 세금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16조 [기타]**

* 1.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없다.
		1. 준거법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과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2. 분리 조항 :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 유효하지 않더라도 전체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본 계약 외 특약 사항에 의해 본 계약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크리에이터”와 “회사”는 다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고용관계 등 없음 : 본 계약은 계약 쌍방에 대하여 고용, 근로 또는 매니지먼트, 저작권 중개 대리, 신탁 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
	2. “회사”와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한 영문 계약이 있는 경우 해석과 적용에 있어 상호 충돌되거나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 본 국문 계약이 영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제 17조 [분쟁의 해결]**

* 1. 본 계약 관련 모든 분쟁은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상호 신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쌍방 합의로 대한상사중재원에의 중재 신청을 통해 해결하되, 일방이 합의에 의한 중재 신청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에 따른 소송으로 해결한다.

**제18조 [특약]**

(이하 기명, 날인(또는 서명)을 위한 여백)

“회사”와 “크리에이터”는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

상호 :

주소:

대표자: (인)

**“크리에이터”**

주소 :

생년월일:

성명(실명) : (인)

**“크리에이터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

관계 :

주소 :

생년월일 :

성명(실명) : (인)